

經濟現實과 經濟學의 倫理性

李俊求*

<목 차>	
I. 머리말	2) 自由主義的 正義觀
II. 經濟學과 倫理: 歷史의 展開	3) 功利主義的 正義觀
1. 經濟學의 胎動期	IV. 韓國經濟와 倫理性
2. 政治經濟學의 進展	1. 倫理의 側面에서의 經濟發 展過程의 再照明
3. 經濟學의 科學化	2. 我們 經濟의 當面 現實과 倫理
III. 分配의 正義의 理論	V. 맷음말
1. 分配의 本質	
2. 分配의 正義의 諸思潮	
1) 平等主義의 正義觀	

I. 머리말

오늘날의 經濟學은 주로 實證的(positive) 분석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倫理的인 측면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통념이 지배적이다. 사실 현대에 들어 오면서 경제학은 積極化되어 數理化 내지 計量化의 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1776년 Adam Smith에 의해 창도되고 그에 이어 David Ricardo나 John S. Mill에 의해 그 토대가 더욱 굳어진 政治經濟學(potitical economy)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학의 현실을 두고 우려하는 소리가 종종 들려오기도 하나, 아직도 정치경제학적 관심으로 회귀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理論으로서의 경제학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실의 경제에서 倫理的인 側面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물리현상처럼 움직여 나가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이를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윤리성과 펠테야 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윤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 서울대, 경제학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경제생활 역시 이와 같이 옳고 그른 것의 구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한 경제는 윤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Adam Smith 이전에 經濟的인 思考라는 것이 처음 태동할 때, 윤리적인 관심이 바로 그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倫理學者들이 바로 초기의 經濟學者들이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윤리적 관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경제현상의 윤리적 기반은 아직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단지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이 이 명백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이 세계의 거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資本主義가 무한한 利潤追求의 욕망에서 움직이는 체제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엄연한 倫理的인 土臺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윤리적인 토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利潤追求라는 것이 어떤 手段을 통해서라도 돈만 끌어 모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즉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이윤추구를 道德이나 倫理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오해가 사회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특히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계층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매우 不健全한 經濟秩序를 갖기가 십상이다.

불건전한 경제질서하에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效率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짚은 시작에서 보면 국민 모두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체제에서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판단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용되는 방법이 불건전한 데서 나오는 副作用이 언젠가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Adam Smith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健全한 經濟秩序를 전제로 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건전한 경제 질서하에서 私事로운 利益의 무한정한 추구가 결코 公益으로 인도될 수 없다.

경제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公正한 分配라는 경제적 문제가 倫理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물론 이를 통해 국민들의 物質的 厚生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財貨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넬 수만 있다면 국민들의 물질적 후생은 그만큼

증진되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후생 증진의 必要條件은 될 수 있으되 充分條件까지 될 수는 없다. 더욱 많이 생산해낼과 동시에 이를 국민들 사이에서 적절히 나눌 수 있어야만 국민들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 이때 ‘적절하게’ 나눈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倫理的인 考慮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현실의 경제문제는 倫理性과의 밀접한 연관하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經濟學의 현실이 어떻든간에 이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문제 혹은 경제학과 윤리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제 2 장에서는 經濟學의 胎動期에 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여 윤리적인 관심이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변환하게 되었는가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初期의 政治經濟學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저절로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장의 끝부분에서는 現代에 들어 오면서 경제학에서 윤리적 관점이 점차 희박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 한다. 제 3 장은 경제문제에서 윤리적 관점이 가장 진요하게 요구되는 分配의 問題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소위 ‘分配의 正義’라고 불리우는 윤리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분배문제에서 윤리적 고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이게 된다. 제 4 장에서는 관심을 우리의 當面 現實로 돌려 韓國經濟에서의 윤리적 토대가 지난 몇십년 간의 발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 논의를 통해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 章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이다.

II. 經濟學과 倫理：歷史的 展開

1. 經濟學의 胎動期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제학은 市場經濟를 전제로 하고 이의 운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D. Fusfeld(1982)는 시장경제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매우 최근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이의 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中世, 즉 15세기 전후한 시기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장경제가 나타난 이후의 특징, 다시 말해 利潤에 중점을 두는 物質的인 價值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 때의 주요한 관심사는 이윤의 추구가 아니었으며, 權利나 義務 같은 것이 더욱 중시되었다. 인간의 경제생활이 있었던 이상 그 때에도 역시 교환이나 상업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도 지금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5세기 이후 市場經濟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해나가게 되자 이 새로운 현상은 그 당시 많은 識者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道德哲學의 관점에서 이 현상에 憂慮의 뜻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 한 예로, 16세기 중반의 英國 哲學者 Francis Bacon은 당시의 점증하는 物質主義를 개탄하는 글을 썼던 것을 볼 수 있다.

15, 16세기에 들면서 유럽에서 갑자기 市場經濟의 발전이 촉진되기 시작한 데에는 新大陸의 發見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젤란, 컬럼버스 혹은 쿡 등의 항해로 인해 새로이 유럽인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신대륙은 유럽으로 하여금 일찍이 중세의 탈을 벗어던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대륙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交易과 商業의 기회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곳으로부터의 금이나 은 같은 貴金屬의 대량유입은 화폐경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을 통해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종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장경제의 등장은 기존의 身分關係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장경제와 때를 맞추어 國民國家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구질서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빌휘해 오던 두 기둥 즉 教會와 貴族階級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에 國王과 市民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커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등장은 사회전체의 變革을 초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질서의 등장은 經濟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의 식자들은 새로운 經濟秩序의 道德性 (morality)을 조심스럽게 분석해보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行爲의 基準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척도는 더 이상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세의 대표적인 사상가 Thomas Aquinas는 利子의 取得을 ‘usury’라 하여 일종의 否定的 시각에서 보았고 또한 이것이 중세의 규범이 되고 있었는 데 새로운 경제 상황하에서는 이것이 적합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제 1 세대의 경제학자들은 神學者(theologian)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들 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생활의 倫理的基礎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즉 낡은 경제규법을 대체할 새로운 規範을 발견하여 대중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당시의 경제현상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일군의 신학자들이 생겨났고, 결국 이들이 가장 최초의 經濟學者들이 된 것이다.

시장경제가 등장하기 이전의 전통적인 가치규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customary prices)과 ‘안정된 경제관계’(accepted economic relationships)에 입각해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成功을 위주로 하고 利潤을 획득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때의 價值規範이 오늘날의 그것과 얼마나 등떨어진 것이었나를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한 獨逸 성직자가 로마로 巡禮旅行을 떠난 차에 그곳에서 錫式用으로 쓸 銀製 잔 하나를 구입하게 된다.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일단의 상인과 만나게 된 그는 그들에게 그 잔을 보여주고 그것을 얼마에 샀노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상인들은 그가 그 잔의真正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값에 샀음을 알려주고 그를 축하해 주었다. 그 상인들은 세속 물정에 어두운 그 성직자가 상인들인 자신들보다 훨씬 더 흥정을 잘 했다고 말하며 웃어댔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성직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로마로 떠나 그 잔을 판 사람에게 공정한 가격이 되도록 差額을 补償해 주고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道德的인 일이었기 때문이다.”(D. Fusfeld, 1982 : 8)

이 일화는 중세의 전형적인 가치규법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永遠한 救援을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몇푼의 이윤은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장경제와 더불어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한 태도, 즉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世俗에서의 物質的 成功을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가치규법은 무의미한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등장은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하게 되었다. 즉 救援(salvation)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物質的 成功(success)을 추구해야 하는가의 갈등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딜레마가 宗教改革의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에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경제생활의 현실하에서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도덕에 위배된다는 기성 교회의 설교에 사람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職業을 하나의 召命(calling)으로 보고 견전한 이윤추구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고 나온 改新派가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제윤리는 종교와의 연관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적으로 世俗的이며 物質的인 가치체계로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에도 역시 道德的 딜레마의 잔재는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윤리적 원칙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책임을 느껴야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속적인 원칙은 자신의 利害關係만을 고려해도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와의 연관은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윤리적 원칙과 세속적 원칙 사이의 갈등은 아직 청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18세기에는 ‘noblesse oblige’의 철학으로 나타나, 사회의 指導層은 고귀한 責任感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범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Fusfeld의 주장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19세기에서의 해답은 社會主義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福祉國家의 이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기본입장은 無制限의 이윤추구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여간 이와 같은 딜레마는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학자로 하여금 道德哲學者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政治經濟學의 進展

Adam Smith가 1776년에 발간한 『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서 독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들로써 이들이 신학자와 경제학자를 겸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제는 전적으로 경제학만 전담하는 職業的 經濟學者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Smith 자신이 도덕철학자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듯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의 경제학도 역시 도덕철

학 내지 윤리학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의 경제학과는 상당히 다른 문제의식 하에서 경제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Smith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의식은 앞에서 계속 논의되어왔던 道德的 딜레마였다. 즉 개인의 私事로운 利得의 追求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가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가 내세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명제는 이 문제에 대해 그가 내리고 있는 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이 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끼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맥주 만드는 사람, 혹은 뺑 만드는 사람의 慈悲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利得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人情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自己愛(self-love)에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대신 어떤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된다고 말할 뿐이다.”(Adam Smith, 1976 : 18)

이 명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지극히 명백하다. 우리의 물질적 후생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利他心 혹은 慈悲心이 아니고 오히려 利己心이라는 의미이다. 각자가 이기심에 의하여 행동할 때(시장기구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러한 개별적 행동을 公益과 調和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 그 명제의 내용이다. 물론 Smith에 있어서 이기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시장기구가 전제될 때에 한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러한 전제가 정당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결국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가 도덕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Smith는 利己心이 모든 경제활동의 推進力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든가 안정적인 사회질서 나아가서는 국민복지의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앞에서 제기한 도덕적 딜레마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보게 된 셈이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는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資本主義化的 理念의 基礎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Smith가 말하고 있는 바 ‘私事로운 利得’(self-interest)의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無限한 자신만의 이득의 추구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그것은 옳은 해석이

될 수 없다. 도덕철학자로서의 Smith가 그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의 저작들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되 남들과의 共感의 끈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리의 추구란 건전한 도덕적 기반 위에서의 사리추구이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리추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dam Smith에 의해서 창도된 政治經濟學(potitical economy)의 전통은 David Ricardo와 John S. Mill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의 정치경제학 역시 倫理性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icardo의 중심적인 관심사였던 分配問題는 윤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가 본격적으로 분배에서의 윤리라는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의 분배 이론에서 윤리적 함축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ill에 있어서는 당시의 資本主義的秩序의 正當性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으므로 윤리적 함축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현상이라는 것이 정치, 사회적인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 경제현상의 분석에 적합한 것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점은 Karl Marx에 의해 너무나도 잘 밝혀져 있다. 그는 資本主義體制의 윤리적 토대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에게 단지 이론만을 위한 경제이론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의 이 전전한 전통은 20세기에 들면서 경제학을 科學化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斷絕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3. 經濟學의 科學化

오늘날 경제학을 ‘社會科學의 女王’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경제학이 方法論에 있어서 여타의 사회과학분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嚴密性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이름일 것이다. 사실 경제학은 일찌기 自然科學的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매우 엄격한 방법론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물론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의 채택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학이 사회현상의 분석을 지향하고 있는 한, 자연현상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자연과학과는 달라야 하고 따라서 방법론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학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방법론의 엄격성에 있다는 사실만은 자명하다.

경제학의 흐름이 앞서 말한 정치경제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채택 즉 數理化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일이었다. Cournot라든가 Walras같은 수리적 분석에 관심을 둔 경제학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종래의 경향은 사라지고 經濟現象의 實證的(positive) 분석에 치중하는 새로운 경향이 싹트게 되었다. 경제학에서 과연 價值(value)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들러싼 소위 ‘價值論爭’이 Max Weber와 歷史學派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경제학의 이론에서 는 가능한 한 가치판단을 적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특히 論理的 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의 영향까지 가세되어 경제학의 방법론 내지 분석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오직 立證可能한 명제만이 科學性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볼 때 종래의 정치경제학적 전통에서 관심을 보여오던 많은 문제들이 비과학적이라 하여 배척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많은 유용한 경제문제들이 경제학의 연구대상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즉 경제학의 과학성이라는 것은 유용한 직관을 희생함으로써만 달성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경제학은 되도록이면 價值判斷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따라서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의 문제는 더 이상 경제학의 본류에 들어 가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왜 效用의 極大化를 추구하며 과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은 생략한 채 효용극 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하고 있다. 기업들이 利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란 것도 역시 사람들의 집단인 이상 倫理를 초월한 존재일 수는 없으나 현재의 경제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방법을 보면 마치 윤리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의 경제학에서 윤리적인 관점이 없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현실경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요한 문제에 관해 경제이론이 東手無策일 수밖에 없다는 테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분배의 문제는 어떤 분배의 상태가 正當한 것인가라는 倫理的 觀點이 반드시 개입되어야만 풀려질 수 있는 것인데 현대의 경제학으로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 혹은 經濟秩序의 문제에서도 어떤 경제질서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때 기존의 경제이론은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대 경제학의 危機를 말하는 사람들은 政治經濟學의 전전한 문제의식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2세기가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완벽하게 과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학이 倫理性과 거리를 둘으로써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 그 자체는 분명한 진실이다. 현대의 경제학이 비록 정치하고 엄밀한 方法論을 사랑하고 있다하나 거기에서 끌어내어진 결론이 현실의 경제를 영위하는데 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경제학에서 倫理의 문제와 가장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分配理論에서 윤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I. 分配的 正義의 理論

1. 分配的 正義의 本質

분배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分配의 狀態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놓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분배상태를 놓고 그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람직한 분배상태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規範的인 영역에 속하는 것 이므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리 동질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무리한 기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바람직한 分配의 像은 어떤 명백한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막연한 생각의 형태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 사회가 당면하

고 있는 여러 문제중에서 오직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百家爭鳴의 양상을 띠고 있는 현실도 이와 같은 原則의 다양성 및 모호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배에 대한 본격적인 思惟의 출발은 과연 어떤 분배상태가 바람직한 것이냐를 정립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철학자들은 바람직한 분배의 문제를 ‘正義’(justice)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성찰해왔다. 즉 이 문제는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의 형태로 道德哲學 또는 倫理學의 일부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다. 분배적 정의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Etica Nicomachea)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각자가 가진 價值에 比例하는 분배, 즉 각자의 사회적 기여에 비례하는 분배가 바로 正義로운 분배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의 뒤를 이어 현대의 롤즈(J. Rawls)나 노직(R. Nozick)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분배적 정의의 탐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째 짜임새 있는 이론들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분배적 정의란 개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분배적 정의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모든 便宜과 負擔이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뜻하게 된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에서의 분배적 정의란 經濟的인 것에 국한된 편익과 부담의 분배와 관련된 정의를 뜻한다. 따라서 이 개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自由나 參政權 같은 비경제적 가치의 분배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며, 반면에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순수하게 物質的인 것의 분배에만 국한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주로 물질적인 것의 분배와 관련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분배적 정의에 논의를 한정시키기로 한다.

분배적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분배의 정의가 다음 네 가지 基本要素를 포함하는複合的인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의 첫번째 요소는 ‘權利’(rights)이다. 어떤 분배의 상태가 정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 어느 누구의 정당한 권리도 침해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은 세심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만

야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 거부되고 있거나 혹은 그로서는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떠맡도록 강제되고 있다면 그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편익과 부담의 분배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정의로운 분배의 두번째 요소는 ‘公正性’ (fairness)이다. 우리의 언어습관에서 ‘正義로운 분배’ (just distribution)과 ‘公正한 분배’ (fair distribution)의 차이를 뚜렷하게 분간해내기 힘들다는 사실은 정의라는 개념에 있어 공평성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면 곧바로 공정한 분배를 연상할 만큼 정의에 있어 공정성의 비중이 큰 것이다.

세번째로 정의로운 분배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同一한 道德的 價値를 가진 존재들이란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양이나 능력, 혹은 배경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피상적인 차이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마저 달리 하여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 안의 물질적 가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同等한 權利를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정의로운 분배의 마지막 네번째 요소는 ‘받을만한 資格’ (desert)에 따른 편익과 부담의 분배이다. 어떤 특정한 분배 상태 하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별달리 그럴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富를 독차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분배의 요건들이 이미 만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正義感은 심히 손상될 수밖에 없다. 각자가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범위내에서 물질적 가치를 소유하는 분배가 아니고서는 정의로운 분배라고 인정받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는 무엇에 의해 판가름되어야 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생각나는대로 ‘能力’의 많고 적음에 의해 판가름되어야 한다고 하자.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지만, 능력만에 의해 그 자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을 만한 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努力’도 능력에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받을만한

자격이란 결국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물질적 가치의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다 뛰어난 能力과 보다 많은努力을 기울인 사람일수록 보다 많은 부를 소유할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볼 때, 사회에 대한 기여는 과히 크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보다 큰 ‘物質的 必要’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필요에 의해 받을만한 자격이 정당화될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즉 받을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능력과 노력뿐 아니라 必要 (needs)라는 요소에도 의존하여 규정될 수 밖에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받을만한 자격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하는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받을만한 자격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異見을 보일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네가지 요소, 즉 權利, 公正性, 平等性, 그리고 받을만한 資格이란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그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네가지의 요건을 분배적 정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용해시키고자 할 때, 서로간의 衝突로 말미암아 그 중 어떤 것이 부득이 抛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평등성을 추구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므로 결국은 양자택일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상충가능성은 비단 이 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이처럼 분배의 정의를 위한 네가지의 조건이 두루 충족될 수 없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과연 어떤 것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正義를 규정해야 되는가라는 選擇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선택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항상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분배에서의 정의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正義’(justice)라는 道德的 價值가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많은 도덕적 가치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예컨대 ‘自由’(liberty)는 정의에 못지 않게 큰 중요성을 가지는 도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분배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사람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

를 빚을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상충하는 여러 도덕적 가치 중에서 유독 정의에만 다른 것에 우선하는 絶對的 地位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같은 상충가능성은 항상 문제를 유발시킬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공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정의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内的, 外的으로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충가능성을 극복하고 정의의 실체를 확립하는 동시에 나아가 이것이 다른 여러 가치와 상충하는 가능성까지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자연스런 반응이 바로 ‘直觀主義’(intuitionism)이다. 직관주의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명백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直觀에 의존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배적 정의의 실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직관에 의존한다 함은 공동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될 분배적 정의에 관한 여러 思潮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직관주의의 유혹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2. 分配的 正義의 諸思潮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원칙들을 포괄하는 複合的인 概念이다. 따라서 이 원칙들 사이에 어떤 優先順位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바로 하나의 思潮를 다른 것과 구분지어 주는 因子가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平等主義(egalitarianism)는 정의의 여러 요소 가운데 平等性(equality)에 압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조에 속하는 사람이라 해서 個人的 権利가 존중되어야 한다든가 모든 사람이 公平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든가 혹은 받을 만한 資格에 비례하여 뜻을 나눠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고려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同等한 権利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의 중요성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은 잘해야 부차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自由主義(libertarianism)의 경우에는 개인의 權利나 自由가 다른 무엇에도 우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른 이유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自由主義者들은 말하는 것이다. 功利主義(utilitarianism)의 경우는 약간 독특하여 평등성, 권리, 혹은 자유 같은 것은 뒷전에 밀어둔 채 '社會全體의 厚生'이라는 尺度로 정의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가 分配的 正義에 관한 논의를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주요한 思潮라고 할 때,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조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正義를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 즉 받을 만한 資格(desert)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正義觀도 위의 것들에 못지 않게 큰 영향력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독립적인 사조라고 부르기에는 그 체계화의 정도가 너무나 미흡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사람의 받을 만한 자격을 결정지어 주는 요소로서 能力뿐 아니라 努力이나 必要 등 다른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자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쓰인 글 가운데 이들 상이한 요소들이 어떤 원칙하에서 통합됨으로써 받을 만한 자격의 크고 작은을 결정하게 되는 가에 대해 체계적인 思惟를 보이고 있는 것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받을 만한 資格에 比例하는 분배가 왜 正義로운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논증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正義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과 그것이 가진 설득력이 작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아래에서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주요한 傳統的 思潮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1) 平等主義的 正義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시된 각양각색의 分配的 正義觀 중 平等主義의인 것처럼 직접적이고 광범한 호소력을 가진 것은 드물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시대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평등주의의 기본적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平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감히 부정하기 힘든命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감히 부정하고 사람들이 애초부터 不平等하게 태어났음을

주장한다면 그는 이를 立證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된다. 사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무모하게도 不平等함을 입증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平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실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에 놓아야 할 當爲까지 자동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平等性은 정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요소와의 相對的 關聯하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平等主義에서와 같은 평등성의 지나친 강조는 정의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부차적인 위치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지극히 세심한 논의를 거친 후에 라야만 판가름 될 수 있을 것이다.

평등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정의의 또 다른 요소, 즉 개인의 正當한 權利를 경시하는 데 있다고 자주 지적되고 있다. 만약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서도 平等性의 實現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평등성에의 요구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相衝可能性은 매우 크게 존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평등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개인의 權利를 선택했던 것이다. 평등주의자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부담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平等性이 우선해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논증하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일에 있어 평등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겨룬 성과는 과히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평등주의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평등성에의 요구가 自由라는 또 다른 도덕적 가치와도 相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정의의 요체가 평등성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험한 터에, 이것은 그냥 덮어둔다 하더라도 正義와 自由의 두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왜 正義가 우선해야 하는가를 또다시 논증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평등주의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만약 우리가 自由라는 개념을 보다 積極的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정의와 자유가 반드시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응수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의 개념, 특히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남에 의해서 強制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평등주의자들은 이러한 消極的인 의미에서의 自由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되지 않는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를 부여받고 있다 해서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는 쓸 수 있는 돈의 액수에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결국 自由란 단순히 强制가 없다는 것 이상의 積極的인 의미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코헨(G. Cohen, 1978)의 ‘實質的 自由’(effective liberty)란 개념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빈사상태에 있는 한 어린이에게 우유를 사주기 위해 어떤 백만장자에게 조세라는 强制的手段을 적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강제적 수단이 그 백만장자의 정당한 所有權과 人格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아마도 소수의 과격한 教條的 自由主義者를 제외한다면 감히 그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조세의 부과 때문에 몇몇 사람의 消極的 自由를 구속하는 결과를 빚을지 모르나 사회전체의 實質的 自由는 增大된다는 점에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自由란 개념을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그 자체도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등주의자들에 있어서 평등성으로 대표되는 正義의 원칙과 自由의 원칙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상충가능성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바와 같이 平等主義의 分配的 正義觀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평등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物質的 價值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런데 “평등하게 분배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선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價值있는 물건들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양으로 분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제쳐두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마다 모두 嗜好가 다르고 必要 역시 다른데에 모든

물건을 각각 똑같은 양으로 나누자는 주장에 누가 수긍하겠는가? 아무리 강한 평등주의적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극단적인 평등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平等이란 말을 어느 정도 탄력성있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똑같은量으로 가지기보다 다만 누리고 있는經濟的厚生의 수준만 같다면 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혹은 경제적 후생이란 것이 그主觀性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所得이나財產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서 평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能力, 努力, 그리고必要가 다른 터에 소득이나 재산을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平等이란 개념을 한층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最小限의生活水準' (minimum standard of living)에 대해同等한權利를 갖는 것으로 평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자는 이것이 너무 미온적인 평등이라 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이 탄력적인 해석은 너무 극단적인 평등이 갖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지衣・食・住라는 인간의生物的 requirement만을 포함시켜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회에서 몇몇한市民으로서 살아나가기에 필요한文化的 requirement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나아가 문화적 요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한 동등한 권리로서 평등을 해석하고 이에 입각하여正義로운分配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고 남는 것의 분배에 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남는 경제적 자원을 모두 한 사람이 독차지하게 될 때도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강한否定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남는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관련된 또 다른 원칙으로 보강되지 않는다면正義의原則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평등한 분배라는 개념은 또한 모든 사람이 '同等한機會' (equal

opportunities)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유독 평등주의에만 고유한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自由主義나 功利主義의 정의관 모두가 정의로운 분배의 기본 요건으로서 동등한 기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同等한 機會라는 말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평등주의에 고유한 해석상의 특징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急進的 平等主義者로 볼 수 있는 닐슨(K. Nielsen, 1978)은 기회의 평등을 동등한 自由와 동등한 自尊心 내지는 道德的 自主性(moral autonomy)을 보장해 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所得과 財產의 偏重은 인생의 전망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이한 階級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의 존재는 기회의 평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닐슨은 결국 필요나 기호의 차이에 의한 약간의 조정은 인정하나 기본적으로 均等한 所得과 財產의分配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機會의 平等과 소득이나 재산의平等한 分配 사이에는 떨리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해석의 평등주의적인 특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육받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自由主義의 機會의 平等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平等하게 태어났고 따라서 모든 물질적 가치는 平等하게 分配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직관적 호소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平等主義의 正義觀이 각계 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가 무엇인가를 엄격하게 논증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직관적 호소력을 넘어서는 엄밀한 논리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평등주의가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시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첫째로, 正義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왜 平等性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하는가를 논증해야 한다. 둘째로는 여러 가지의 道德的 價值중에서 정의가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함을 논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평등한 분배의 구체적 내용

이 무엇인가를 명백한 기준의 제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평등주의의 成敗는 바로 이 세가지 시험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평등주의가 아직까지는 민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평등주의의 논리적 설득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改善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등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정도의 문제점은 다른 모든 分配的 正義의 思潮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自由主義的 正義觀

自由主義的 正義觀 역시 平等主義的 正義觀에 못지 않게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사조이다. 롤크(J. Locke), 몽테스큐(B. Montesquieu), 칸트(I. Kant), 스미드(A. Smith) 등 수많은 이름들이 자유주의와 결부될 수 있음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요체는 모든 사람이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는 분배의 상태가 正義로운 것이라는 데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의의 여러 요소중 權利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正義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自由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개 保守的 性向으로 나타나게 되어 평등주의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進步的 性向에 맞서게 된다.

自由主義의 정의관이 피력되고 있는 현대의 저작으로서 하이예크(F. Hayek, 1967)나 프리드만(M. Friedman, 1962)의 것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주장 이상의 내용은 담지 못하고 있고, 다만 노직(R. Nozick, 1974)에 있어서 가장 권위있고 체계적인 자유주의의 해설을 발견하게 된다. 노직의 力作 *Anarchy, State and Utopia*에 제시된 그의 분배적 정의관은 自由主義의 입장의 典型으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노직은 사람이 단순히 手段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目的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칸트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個人的 權利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없이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 희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社會

全體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이용할 권리を持つ게 있지 못하며, 하물며 國家나 政府라면 그런 권리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출발은 자연 그로 하여금 ‘最小限의 政府’(minimal state)가 정당화될 수 있는 한의 가장 廣範한(extensive) 政府라는 입장을 취하게 만든다. 그에 의하면 이 이상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려는 어떠한 시도도 펼쳐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직은 分配的 正義를 달성시킨다는 명목으로 政府가 개입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란 용어 그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分配’라는 말에 접하게 될 때면 으레 어떤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메카니즘을 연상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누어 져야 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個人이나 集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란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가 교환을 통해 그것을 획득했다거나 혹은 증여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분배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노직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分配的 正義’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所有에 있어서의 正義의 原則’(principles of justice in holdings)이란 中立的 用語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직의 정의관은 ‘正當한 權利의 原則’(entitlement principles)에 극명하게 압축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 원칙은 取得(acquisition)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移轉(transfer)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그리고 不正義의 是正(rectification of injustice)에 관한 원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어떤 사람이 取得에 있어서의 正義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법을 통해 어떤 물건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있다’(be entitled to)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移轉에 있어서의 正義의 原則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역시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어느 원칙에도 의거하지 않고 생성된 소유권은 정당성이 없다. 노직에 있어서의 正義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노직은 자신의 원칙을 自由主義나 功利主義의 원칙과 대비시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우월함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歷史性이 있느냐의

여부이고, 둘째는 어떤 정해진 패턴에 따라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냐 아니냐의 여부이다. 어떤 분배의 상태를 평가할 때, 단지 결과로서 나타난 상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지나온 過程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오직 노직 자신의 원칙만이 이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 분배하고자 할 때 반드시 再分配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개인의 權利가 침해받게 되는데, 이 점에서 볼 때 역시 자신의 원칙만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노직은 結果에 있어서의 正義보다 節次에 있어서의 正義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 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가 얼마나 광범한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結果에 있어서의 정의가 보다 實質的인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正當한 權利와 自由는 다른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自由主義의 구호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선명한 論理와 유려한 修辭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벌릴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그들의 주장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들은 앞에서 설명한 평등주의자들과 방향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개인의 權利와 自由가 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가를 논증하는 일이다. 자유주의자 역시 이 일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自由主義者들에게서 받는 印象이 ‘독선적이며, 가진 자만을 응호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그것이 節次上의 形式的인 正當性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분배의 實質的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는 테에서 나온다고 보여진다. 자유주의에서 묻는 것은 오직 正當한 方法에 의해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느냐의 여부이며, 이 正當性만 보장된다면 누가 무엇을 갖든 혹은 누가 얼마나 많이 갖든 결코 상관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모든 富가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깔주립에 시달리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節次上의 정당성만 인정될

수 있다면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분배상태가 결정될 때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상태는 결코 초래되지 않는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차상의 정당성만이 고려되는 경우 그같이 不平等한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클 것임이 분명하다.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앞에 두고 節次上의 正當性이 보장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갈채를 보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한 애로우(K. Arrow, 1978)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正當한 方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노직은 소유권에 관한 록크(J. Locke)의 견해를 이용하여,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에 자신의 勞動力이 결합될 때 정당하게 소유할 權利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같이 얹히고 설친 복잡한 체계에서 이 설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암묵적으로 政府의 干涉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市場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뜻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뜻이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勞動價值說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주장에는 일말의 정당성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자유주의자들에 동조하여 自由로운 市場機構에 의해 결정된 뜻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역시 문제는 남게 된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市場은 결코 순수하고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며, 각양각색의 不完全性은 물론 政府의 介入 등 수없이 많은 티가 섞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순수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뜻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실의 시장에서 결정된 뜻까지 한꺼번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극심한 분배상의 偏重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도 시장기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혹은 시장 이외의 모든 社會制度가 있는 자들에게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의 不偏不當性만을 강조할 수 있을까? 自由主義者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들의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思

慮를 발견하기 힘들다.

自由主義의 原則의 철저한 적용은 자유주의자로 하여금 반드시 현실옹호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정의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를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힘들지라도, 많은 경우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가능하다. 예컨대 강압이나 사기나 부정부패를 통하여 취득된 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선뜻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不正義는 즉각적인 是正이 필요함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노직 자신도 정당한 권리의 원칙의 세번째 요소는 과거의 不正義를 是正하는 것에 관한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직의 저서 어느 부분을 보아도 문제점의 나열만 볼 수 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발견할 수 없다. 즉 過去의 不正義를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이냐에 대한 具體的인 代案의 제시가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노직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를 자처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과거에 저질러진 수많은 不正義가 아직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새로운 不正義가 저질러지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모든 일에서 정의가 관철될 수는 없다. 만약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듯이 正義의 原則에 진정으로 충실하다면 이러한 현실을 무조건 옹호하려 들 것이 아니라 냉철한 비판자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막연히 不正義의 是正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뚜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를 감시해야만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이 같은 二律背反性, 즉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스스로의 행동에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 그 자체의 신빙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이율배반성은 자유주의자들의 失策이라기보다 자유주의 그 자체가 갖는 矛盾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既得權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들은 過去의 不正義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엄밀한 논리로 따져보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현실의 애매한 상황에서는 不正義의 是正과 既得權의 保障이 상

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점은 자유주의가 제시한 순수한 正義의 理念 그 자체는 하나의 당당한 가치체계로서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行態에 대해서 겨누어져야 할 비판을 자유주의적 原則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르긴 해도 自由主義의 原則을 본래의 정신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겨난 분배의 상태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낼 사람은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자유주의적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단순히 政府의 간섭을 줄이고 市場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분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의 피상적인 의미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물론 안 된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유주의가 제시한 正義의 原則이 철저히 관철된다는 의미에서의 적용이어야 할 것이다.

3) 功利主義的 正義觀

功利主義的 正義觀은 벤담(J. Bentham)의 유명한 警句, ‘最大多數의 最大幸福’(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總體的 厚生을 極大化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한다는 말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이 그 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판가름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善(goodness)과 幸福(happiness)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사회전체의 후생의 增減에 입각한 ‘功利의 原則’(principles of utility)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 된다.

벤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밀(J.S. Mill), 에지워드(F. Edgeworth)를 거쳐 현대의 스마트(J. Smart)나 헤어(R. Hare)로 이어지는 공리주의 철학은 法秩序, 政治制度 혹은 社會制度의 改革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經濟學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厚生經濟學이란 분야는 그 기본적 성격이 공리주의 철학의 경제학적 적용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철학 또는 사회철학의 한 이론으로서의 공리주의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功利主義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道德과는 동떨어진 ‘幸福’이란 개념을 통해 도덕성을 규정하려는 ‘功利의 原則’에 있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텐

지만, 그것을 善과 惡의 문제로까지 결부시키는 것은 분명히 무리일 것이라 는 생각이 듈다. 또한 공리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란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를 둘러싸고서도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여기서의 幸福이란 말은 快樂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欲求의 充足을 의미하는가? 최대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행복의 總合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복의 平均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한 공리주의적인 원칙은 개별적인 ‘行動’(act)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規制’(rule)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공리주의를 둘러싼 의문점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節의 목적이 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적 평가를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分配의 正義觀만을 고찰하는 데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분배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物質的 價值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골고루 나누어진 상태일까 아니면 소수의 수중에 獨占된 상태일까? 이 물음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대답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건에 따라 이런 답도 저런 답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功利主義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平等한 분배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벤담의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음미해 보자. 그는 한 사회의 幸福의 總合을 계산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한 뜻으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한 뜻 이상으로 셈해져서는 안 된다’(Everybody to count for one, nobody for more than one)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국왕도, 귀족도, 평민도, 거지도, 도둑도 모두 똑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平等主義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에지워드(F. Edgeworth, 1897)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平等主義의 功利主義가 괴력되고 있다. 밀(J.S. Mill)에 의해서 제시된 公平한 税의 규칙으로서의 ‘**均等한 犠牲의 規則**’(equal sacrifice rule)을 모든 사람의 限界에서의 效用의 희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에지워드

드는 무척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만일 모든 사람의 效用函數가 동일하고 소득의 限界效用이 체감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세수입이 전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課稅로써 충당되어야만 균등한 희생의 규칙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에지워드의 생각대로라면 극단적인 경우 모든 사람의 稅後純所得이 동일해져야 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

러너(A. Lerner, 1944)는 한층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最善의 分配는 均等한 分配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에지워드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의 效用함수가 동일하다는 제한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소득의 限界效用이 체감한다는 가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주어진 액수의 소득을 A, B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짐에 있어 均等하게 나눌 때 효용의 합이 極大化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均等한 분배가 最善의 分배라는 결론이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흐름과는 달리, 功利主義的 正義觀이 무척 불균등한 분배의 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때도 있다. 벤담류의 단순한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效用의 합을 社會的 厚生의 水準으로 보고 이를 극대화시켜 주는 분배의 상태를 지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소득의 한계효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공리주의적 원칙은 이 사람에게 더욱 더 많은 소득을 분배해 주도록 요구하게 된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은 특정한 물건의 소비에 대한 것이지 所得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며, 따라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매우 偏重된 分配의 상태를 지지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現代哲學界에서 分配的 正義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온 두 巨峰이라 할 수 있는 룰즈(J. Rawls)와 노직(R. Nozick)의 분배적 정의관은 매우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예리한 비판에 대해서만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이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것의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權利가 침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리주의자라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富를 이전시킴으로써 社會的 厚生이 증가된다고 할 때 그와 같은 移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설사 그러한 富의 移轉이 强要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공리주의자에게 별 큰 의미가 없음이 분명하다. 반면에 롤즈와 노직은 이같은 강요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自由主義의 대변자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노직이 그와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다만 사회전체의 후생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의 권리가 약간 침해된다해서 어떤 정책에 꼭 반대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롤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그와 같은 비판을 가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正義의 原則 역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差等의 原則’ (difference principle)은 어떤 사회의 가장 못사는 사람을 보다 잘살게 해주는 것이 正義로운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직(1974)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못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가 아니라면 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갈 물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롤즈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자신도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功利主義는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個人間의 效用比較’ (interpersonal utility comparison)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리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전체의 후생이란 것은 개인간의 效用比較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厚生經濟學에서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이론적 결론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효용수준을 비교가능하게 해주는 그 어떤 논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뿐 아니라 공리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학문적 저술에서, 사회평론에서, 그리고 정책처방에서 은연중에 개인간의 효용비교를 감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慣行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便宜性과

實用性이란 관점에서 이를 묵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논리의 차원에서 볼 때 功利主義가 개인간의 효용비교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우선 正義로운 分配를 논의함에 있어 道德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厚生이란 개념 위에 정의를 설정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에서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항상 수세에 몰려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實用性이나 現實的呼訴力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分配政策의 기본지침을 평등성이나 개인의 권리 혹은 자유 같은 추상적인 구호에서 찾느니보다는 사회의 厚生을 증진시킨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에서 찾는 쪽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의 영향은 자연히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을 보게 된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각양각색의 分配政策들, 나아가 경제정책들이 그 저변에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는 功利主義的 理想을 밀받침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 그리 큰 힘이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IV. 韓國經濟와 倫理性

한국경제는 지금 종전에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필자는 한국경제의 倫理性에서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난 날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분석해 보고 왜 그와 같은 발전과정이 오늘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1. 倫理的側面에서의 經濟發展過程의 再照明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비약적인 성장

을 이룩하였다. 혹자는 이를 두고 ‘壓縮成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하여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예를 다른 테서 찾기는 힘드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비약적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글의 주요 목적이 이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이다.

‘서둘렀다’는 것은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때로는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날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보았던 “하면 된다”라는 구호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라는 말이 進取의인 氣像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될 것이라도 밀어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거지가 내포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추진해 왔던들 그렇게 빠른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 분명하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라는 구호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풍미했던 태도는 “어찌 되었든 벌고 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경제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의당 個人的 富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게 마련인데, 이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몫을 차지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보라는 사회적 인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그 당시 우리의 경제는 ‘倫理’라는 것에 신경을 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갔던 것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귀결을 가져온 것은 이 高度成長過程에서 分配的 正義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이다. 분배적 정의의 기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成長第一主義政策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은 당연히 성장의 潛在力이 가장 큰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패턴을 낳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문간의 差別待遇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내수산업보다는 수출 산업을, 근로자보다는 기업주를, 농업보다는 공업을,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체계적으로 優待하는 정책기조가 일관되게 채택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대우가 公正性이라는 분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

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낮은 貨金에서 주로 찾았던 우리 경제의 체질하에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勤勞者들의 權利를 制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헌법상에 벼젓이 허용된 勞動三權마저도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온 사례가 허다했다. 이는 분배적 정의의 첫번째 원칙, 즉 모든 사람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당연히 위배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고착된 분배상태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성장위주의 정책기조가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단서가 되었지만, 이 정책기조 때문에 정의의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생긴 불공평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도성장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政經癥着’ 혹은 ‘權力型不正’의 현상이었다. 이 현상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었어야 할 부분을 ‘政’과 ‘經’이 결탁하여 가로챘다는 점에서 볼 때 하등의 정당성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일이었다.

정경유착과정에서 더욱 더 큰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했던 것은 존재의 기본이유를 公益의 奉仕에서 찾았어야 했을 政治人과 高位公職者일 것이다. 이 정경유착과정에 참여한 기업인도 도덕적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기업인의 경우에는 공익에 대한 봉사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일차적인 목표인 만큼 그들이 져야할 도덕적 책임은 보다 작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현상인 정경유착을 권력형부정으로 바꿔 표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 혹은 권력형부정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심각한 병폐는 우리 사회에서 富가 가지는 正當性의 근거를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創意性이 있는 사람, 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 혹은 보다 부지런히 저축한 사람에게 후한 賞을 주어야만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보상이 자본주의체제의 활력의 요인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축적된 富를 罪惡의 결과로 보는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해로운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전전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의 숫자는 당연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축적된 부를 협잡이나 사기의 소산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사태를 너무 과장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것임은 분명 해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진다. 이 와중에서 전전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존재는 잊혀지고 이 사회는 冷笑的인 분위기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사회의 모든 권위는 도덕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보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道德的 基盤이 崩壞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30여년간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면 빠른 성장에 대해 뿐만 아니라, 이것의 그늘 아래 심각한副作用도 많았으며 특히 分配를 둘러싼 優理基盤의 파괴는 매우 치명적인 害毒을 가져왔음을 보게 된다. 경제발전의 功過를 평하면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는 소득분배의 통계를 인용하여 사실 우리나라의 불평등상태는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아무리 권위있는 통계자료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느낌마저 뜯어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분배관계의 통계수치들이 본질적인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다음項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게 되겠지만 바로 이같은 사회분위기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30여년간에 쌓인 문제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優理的인 問題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新古典派 經濟學者들이 정확한 診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오늘날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는 학문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2. 우리 經濟의 當面 現實과 倫理

분배를 둘러싼 葛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최소한 成長의 측면에서만은 문제가 없던 때와 달리 성장에 대해서조차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분배의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띤 수밖에 없다. 종전에는 성장위주의 정책이 분배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별 이의가 없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마땅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分配의 平等化를 위한 노력이 바로 경제를 빈사상태에 몰아넣은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들고 있으며, 분배에 관한 그나마의 관심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비록 입으로나마 공평한 분배를 외치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보다 시급한 과제에 눈돌릴 때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사실에 있어 분배의 상태를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努力이 변변히 취해지지도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분배문제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었지만, 어떤 획기적인 처방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결과 오늘의 난국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既得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개혁에 유형무형의 방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政府는 끝내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이리저리 눈치보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기득권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제 6 공화국은 그 출범과 더불어 公平性을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改革政策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처로서 대통령 임기 내의 金融實名制 실시와 土地公概念의 정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경우, 이에 관한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재계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은 무기 연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또한 토지공개념의 경우에도 기득권층의 교묘한 로비에 의해 핵심이 될만한 부분은 전부 빠져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과거에도 정부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으로 공평성을 회복시키겠노라는 약속을 해 놓고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경험한 국민들이 이번에는 무엇인가 다를 것을 기대했지만 또 다시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금융실명제의 反對者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이 실시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루 아침에 公平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쌀과 옷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실시를 그렇게 바랐던 것은 이를 통해公正한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不公正을 유발하는 여러 행위들이 이 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모두 그 자취를 감출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牽制라도 받게 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가장 큰 불편을 느끼게 될 계층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때까지 變則的인 金融去來를 통해 데려온 既得權階層일 것이다. 이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은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할 바가 아니었으나,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그들의 저항은 예상 밖으로 잘 조직된 양상을 보였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활용한 무기는 당시 三低好況이 끝난 후 構造調整期에 들어간 우리 경제의 상황이었다. 어차피 삼저호황 같은 비정상적인 호황은 오래 갈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빌미로 과도한 危機意識을 조장하면서 실명제 실시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다.

金融實名制의 포기가 우리 사회에公正性이回復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묻고 싶다. 당시 그 제도의 실시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危機狀況임을 들어 더 이상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실명제의 충격 없이도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분배상의 불공정성이 누적되어 온 데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금융실명제가 당장의 입맛에는 쓰더라도 병의 原因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성급하게 포기해 버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事後的인 評價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構造調整期가 시작되던 때였다고 볼 수 있는 그 때가 금융실명제 실시의 適期가 아니었나 하는 생

각이 든다. 이 제도의 실시와 관련해서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점은 經濟秩序의 再編에 따르는 비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차피 경제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했었으며, 그럴 바에야 아예 근본적 혁신을 통해 새로이 출발하는 편이 나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繁盛할 수 있는 부류의 기업가가 있다면 이 제도가 실시된 상황하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가도 따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전의 상황에서는 地下經濟的 거래에 능숙한 기업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실명제 실시로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을 소유한 사람에게로 比較優位가 옮겨 갈 것이다. 기득권계층이 실명제 실시에 한사코 반대했던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으며, 정부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의 실시를 관철시켰다면 참신한 企業家群의 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분배적 정의를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의 사례는 이외에도 土地公概念의 실질적인 拋棄를 들 수 있다. 근자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를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不動產投機에 의한 엄청난 양의 不勞所得인 것이 사실이라면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통한 블로소득의 원천적 봉쇄는 그 어떤 정체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다는 약속 역시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또한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이었다. 우리 경제의 지도층은 정당한 기업활동에 의한 부의 창출보다는 不動產投機에 의한 부의 증식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었다. 토지공개념의 정착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抵抗勢力의 수는 미미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잘 조직된 힘은 능히 다수의 희망을 꺾기에 충분하였다. 정부가 명분없는 현실론에 근거하여 이들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다.

租稅制度의 근본적인 革新을 통해서 분배적인 正義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세를 포함한 直接稅의 비중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재분배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는 기본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세제도가 그나마 公平하게 운영되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富裕層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 이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업소득자나 의사, 변호사 같은 自由職業所得者の 경우 대부분이 우리 나라의 최고 소득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내는 소득세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企業家들도 여러가지 變則的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결국 中產層에 불과한 봉급생활자만 어김없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財閥그룹들의 상속, 증여세 脫稅是非法는 조세제도가 과거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벌들이 조세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의 든 한푼 들이지 않고 富의 世襲을 행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제도상의 허점을 시정해 보려는 근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왔다. 재벌순위 10위안에 드는 巨大企業群이 10억원도 안되는 세금, 즉 웬만한 큰 집값도 안되는 세금만으로 二世承繼되고 있는 명백한 不條理를 보고서도 못 본 척 해 온 것이 우리의 정부였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잘못하다가 이대로 주저앉고 말지도 모른다는 危機感이 감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진정한 危機局面인지 아니면 過渡期의 調整期인지는 훗날에 가서야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종전에 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움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賃金上昇이며, 過消費現狀이나 勤勞意慾減退 등이 먼 원인으로서 지적되기도 한다. 研究開發投資의 부진으로 말미암은 생산기술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로 이 시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오늘의 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어려운 경제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 그나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도 않은 勤勞者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달려로 표시한 평균임금의 國際比較를 보거나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를 보면 자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고, 그러면서도 生產性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근로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통계자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이 통계수치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단순한 數值 뒤에 숨어있는 真實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근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간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연 우리의 근로자들이 이 통계수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높은 生活水準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근자에 이르러 名目賃金率이 종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비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實質的인 혜택은 생각한 것만큼 클 수가 없다. 더구나 부동산가격의 急騰은 이들의 相對的 窮乏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 이 크다.

어떤 사람은 물가상승 자체가 과도한 임금상승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지적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는 지난 몇년간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임금상승의 원인이 되는 惡循環이 있어 왔다. 이 악순환의 시발이 1980년대 말의 갑작스런 임금상승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왜 그 때 마치 볏물이 터지듯이 勞使紛糾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임금도 따라서 뛰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權威主義의 統治에 의해 억눌려 오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격렬한 힘으로 분출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게 선진국의 근로자들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成熟性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격렬한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임금상승은 그동안 눌러오던 힘에 대한 자연스런 反動에 지나지 않았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초래한 原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을 억눌려 왔던 政府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企業家에게 있었으며, 나아가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不公正한 分配構造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논리적인 귀결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근로자

의 정당한 권리를 권위주의적 통치로 억눌려 왔던 데서 문제가 출발한 것이라면 역시 한국 경제의 倫理的 基盤이 취약한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歷史的 背景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생산성은 형편이 없다는 주장도 세심하게 분석을 요한다. 물론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자신의 보다 열성적이고 강도 높은 작업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은 작업의 背景, 즉 經營組織, 生產技術 혹은 資本裝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두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더 좋은 배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쪽의 생산성이 높게 나올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결국 低賃金에서만 비교우위를 찾아오던 경제구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즈음 우리 사회에 勤勞意慾이란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흔쾌히, 그리고 보다 열심히 일해보고자 하는 태도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음을 필자 자신도 절감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어디에 있으냐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즉 過消費의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나아가 이 두 문제는 분배구조의 불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하게 말한다면, 不公平한 分配構造가 과소비현상과 근로의욕 감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과소비현상 때문에 근로의욕이 한층 더 감퇴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암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이 궁극적으로 분배상의 불공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過消費’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 흥청망청 쓰는 소비생활의 풍조가 생겼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과소비라는 말을 쓰고 있다. 맨 처음에 어떤 계층이 이 풍조를 先導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만약 상식을 동원해 추정해 본다면, 어렵게 부를 축적한 사람보다는 손쉽게 축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추정이 단순한 개연성 이상의 正確性을 갖는다는 믿음을 얻게 된다. 손쉽게 벌어들인 돈이라야 흥청망청 쓸 수 있지 근근히 절약하여 모은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이 예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이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든 社會霧圈氣야말로 과소비현상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손쉽게 벌어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政經癮着構造에 의하여 한꺼번에 큰 돈을 벌어들인다든가 不動產投機를 통하여 앉아서 블로소득을 얻는 것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공정한 분배구조 아래서라면 이와 같이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오텋동안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온존시켜 왔기 때문에 과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不公平한 분배구조는 일반 대중들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줄'만 잘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고지식하게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보다 한몫 잡을 기회나 노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賞을 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美德이라고 아무리 말해보았자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힘든 노동에서 벌어들인 하찮은 돈을 그나마도 다 쓰지 않고 근근히 모았는데도 오른 전세금조차 낼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왜 그동안 힘들여 일해 왔으며, 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약해 왔는가에 대해 심각한 懷疑를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은 매일 빈들거리며 노는 것 같아도 돈이 넘쳐 흐르는 것까지 본다면 자신에 대한 회의는 사회에 대한 敵愾心으로까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과소비의 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한층 더 들뜨게 만들어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 奢侈, 享樂產業의 繁昌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는가

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물론 그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사치, 향락산업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양자가 불가분의關係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은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여 勤勞現場을 외면하고 享樂業所에 모여가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의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를 나무라기 전에 애초에 왜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누가 과연 원초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不公平한 分配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의심할 나위 없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타난 현상에만 집착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을 질타하고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는’ 서민들만을 꼬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당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쳐해 있는 위기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사회를 지탱하는 道德的基盤이 붕괴된 것에서 찾아야 한다. 앞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20여년에 걸친 고도성장과정에서 分配的正義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고, 이에 따라 사회를 떠받치는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가 빚어졌던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치권은 이 난국의 해결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意志의薄弱으로 말미암아 개혁의 반대세력에 굴복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계기도 찾지 못하고 무기력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不公正한 分配構造 밑에서는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힘들지만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損害를 보기 마련이다.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도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나 기업의 처지를 생각해서合理的인 要求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더 많은 임금을 따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태도를 배양하게 된다. 그들은 과거에 ‘合理性’이란 허울이 힘을 가진 자들의 이익에만 봉사해 온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우리 사회에서 경경유착이나 권력형부정으로 인해 致富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렇게 局地的인 현상을 가지고 경제 전체

의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밖으로 끌 수 있다. 경경유착구조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계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非倫理性은 사회 전체에 일체의 權威가 도덕성을 잊어버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극심한 冷笑主義를 보면 이 말의 진리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썩지 않고 아직도 健全性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을 찾아보라고 하면 한참을 헤매어도 쉽사리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는 최후의 양심의 보루이어야 할 教育界가 보이는 추한 모습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비단 교육계뿐 아니라 이 사회의 소금이어야 할 法曹界나 宗教界도 그다지 떳떳하지 못할진대,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 희망을 걸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지 암담해 질 수밖에 없다. 십여년 전만 해도 제일 침착한 문제의 하나로 꼽혔던 것이 公職者의 不正이었는데 이제는 구태여 공직자만을 집어내어 그 비리를 탓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온 사회가 타락해 있는 것이다.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소수 상층부의 타락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계로까지 진전된 것이다.

우리의 경제, 사회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 때문이다. 國際競爭力이 弱化되어 이 시장 저 시장에서 해외의 경쟁자들에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은 병의 증상이긴 하되 그 자체로서 침착한 병인은 아니다. 국제경쟁력의 회복은 단순한 換率調整이나 金利引下 혹은 租稅상의 特惠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같은 정책들이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이 단기적인 처방의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위기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이 사회에 정직하게, 열심히 저축하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후한 상을 받는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는 우리 사회에 分配的 正義를 回復시키자는 의미이며, 강한 道德的 土臺만이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현대를 주름잡고 있는 新古典派의인 主流經濟學이 앞서 설명한 歷史的 過程에 의해 점차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해 온 나머지 기술의 배후에 존재하는

倫理性을 無視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診斷을 함께 있어서도 신고전파경제학만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태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명백한 眞實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림들이 되어 오지 않았는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아무리 물리적인 법칙과 흡사하게 움직여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는 인간의 마음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므로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경제분석은 盲目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이 맹목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V. 맷 음 말

이 글에서 필자는 經濟現象 혹은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經濟學이란 학문이 倫理性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제현상은 自然界의 물리, 화학현상과는 달리 人間의 마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제현상에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倫理的인 것과 非윤리적인 것의 구별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경제현상은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主流經濟學은 경제이론을 마치 자연과학에서의 이론처럼 만드는 데 온 정신을 쏟고 있다. 현대의 경제학이 엄밀한 方法論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 政治經濟學에서 보면 健全한 문제의식을 포기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현대 경제학의 脱윤리성향은 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分配理論에 대한 無力性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류경제학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몹시 부적절한 방법론임이 명백하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자원배분의 效率性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서 분배의 公平性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온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날의 성장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빠른 成長의 代價로서 분배상태가 점차 불공평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는 사회를 떠받치는 道德的 基盤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게 되었다. 分配的 正義의 관점에서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분배상태를 평가해 볼 때, 統

計數值를 盲信하는 사람들이 내렸을 결론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가지 불평등도지수에 나타난 한국의 분배상태는 과히 나쁜 것이 아니며, 또한 고도성장과정에서 현저하게 악화된 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들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質的인側面에서의 변화였으며,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분배상태가 계속 惡化되어 왔다고 느껴온 이유는 고도성장과정에서 分配的 正義가 점차 磨耗되어 온 것에 의해서야 비로소 납득이 가는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성장해 놓고 보자”라든가 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몫 잡아 보자”라는 등의 拙速과 非倫理性의 합작품이 오늘날의 우리의 분배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既得權階層은 획기적인 개혁에 유형무형의 방해를 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억누를 의사나 능력을 결여하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근로의욕의 감퇴, 혹은 생산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같은 현상들이 사실은 不公平한 分配構造에서 파생되어 나온 徵候들에 불과하다. 다만 新古典派의 방법론을 맹신하고 있는 경제학자들과 이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평범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處方은 나올 수가 없다. 기껏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이란 것이 일시적인 彌縫策이든가 아니면 기득권계층만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방책일 뿐이다.

우리 경제, 사회를 危機에서 견쳐내는 유일한 길은 道德性의 回復을 통한 사회분위기 一新이다. 우리 사회가 倫理的으로 健全한 사회가 되어야만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되살아 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도덕성의 회복과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애초에 도덕성의 타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방조해 온 사회의 指導層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革新의 先頭에 서지 않는 한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 義務를 회피하고 근로자나 서민들만 질타하려고 하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한다.

參 考 文 獻

李俊求

1992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 제 2판, 茶山出版社.

Arrow, K.

1978 "Nozick's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Philosophia*, 7, pp. 265-279.

Arthur, J. and W. Shaw(eds.)

1978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Cohen, G.

1978 "Robert Nozick and Wilt Chamberlain: How Patterns Preserve Liberty," in
J. Arthur and W. Shaw(eds.)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Edgeworth, F.

1897 "Pur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7, pp. 40-70, 226-238,
550-571.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usfeld, D.

1982 *The Age of the Economist*, 4th ed., Glenview: Scott, Foersman & Co.
Hayek, F.1967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lbroner, R.

1980 *The Worldly Philosophers*, 5th e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Mill, J.

1921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Longmans.

Nielsen, K.

1978 "Class and Justice," in J. Arthur and W. Shaw(eds.),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mith, A.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annan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lastos, G.

1962 "Justice and Equality," in R. Brandt(ed.), *Social Justi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